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5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3.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 및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 삭제(안 제23조)

나. 분과위원회의 명칭 정비(안 제28조)

다.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개정(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6. 2. ~ 2022. 6. 2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이 조례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 2024년 9월 21일----- -----.

나.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서울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21일 제정되었으며,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고 있음.

-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이 조례 제21조1) 및 제22조2)에 따라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행일(2017년 9월 21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음.

먹거리시민위원회 추진경과³⁾

- 2017.09.2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 2017.09.21.~2019.09.21.(2년)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
- 2017.11.02.~2019.11.01.(2년) 제1기 먹거리시민위원회 임기
- 2019.09.21.~2022.09.21.(3년)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

- 이에, 따른 먹거리시민위원회의의 존속기한은 최초 2019년 9월 21일까지였으나 서울시는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1)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먹거리위원회란-

<https://fsi.seoul.go.kr/front/fs/civic.do?leftMenuCode=18218>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2019. 8. 7.)한 바 있으며,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19. 9. 4)에서 원안으로 가결⁴⁾되어, 현행 조례에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⁵⁾은 2022년 9월 2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2022년 9월 21일) 만료 도래에 따라 이를 2024년 9월 2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인데,
-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서울시 위원회 운영평가 및 정비계획⁶⁾⁷⁾에 의하면,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으로 위원회 일몰제 적용 강화를 통한 위원회 남설방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존 위원회 운영실적,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4) 자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906), 제출일(2021. 8. 7.)

https://www.smc.seoul.kr/skin/doc.html?fn=T010100090611051.hwp&rs=/files/trans/upload/judging_data/

5)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6)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시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 ‘일몰제’ 적용 강화⁸⁾



- 이에,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서울시 238개 위원회(2021년 기준) 운영 현황 분석자료⁹⁾¹⁰⁾¹¹⁾에 의하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정비·활성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 그러나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필요성, 기능 유사·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 제·개정 시 관행적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향은 서울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으로 제기¹²⁾되고 있고,
-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 모든 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영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나타나, 정부위원회의 40%를 통

8) 서울협치담당관(2021. 6.)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 p17.

9) 서울협치담당관(2020. 6.) 2019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0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 p14.

10) 서울협치담당관(2021. 6.)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 p14.

11) 서울특별시기획조정실(2022. 6.) 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2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 p12.

12) 서울특별시기획조정실(2022. 6.) 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2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 p13.

폐합하겠다고¹³⁾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위원회 존속기한 만료 시, 일몰제 적용 강화로 존속 필요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은 서울시 행정여건 등의 변화¹⁴⁾를 반영하고, 분과위원회의 용어를 일치시키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구성) ①~② (생 략)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2. (생 략) ③~⑤ (생 략)	제2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1. ----- : -----, (삭제), ----- ----- 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1. ~ 3. (생 략) 4. <u>먹거리생태·상생분과</u> : 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먹거리 자원순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화 등)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 5. <u>먹거리건강·보장분과</u> : 지속가능한	제2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먹거리생태·상생분과위원회</u> : ----- ----- ----- ----- 5. <u>먹거리건강·보장분과위원회</u> :

13) 자료: 김선식, 2022. 9. 7., “정부위원회 246개 통폐합 된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7977.html>

14) 자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식품정책과 의견
 -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17. 9월) 시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던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도농교류 사업 등의 업무가 타 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조정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p>건강한 식생활 증진(영양부족,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을 위한 지침개발,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p> <p>6. <u>먹거리공동체분과</u> :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이해관계자(사-자치구-먹거리공동체 등)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p> <p>7. <u>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u>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먹거리 전략 2030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p>	<p>-----</p> <p>-----</p> <p>-----</p> <p>-----</p> <p>-----</p> <p>6. <u>먹거리공동체분과위원회</u> :</p> <p>-----</p> <p>-----</p> <p>-----</p> <p>-----</p> <p>-----</p> <p>7. <u>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u> :</p> <p>-----</p> <p>-----</p> <p>-----</p> <p>-----</p> <p>-----</p>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에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위원회 운영 및 평가·정비 등에 관한 계획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남설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 및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 삭제(안 제23조)
- 나. 분과위원회의 명칭 정비(안 제28조)
- 다.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개정(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2022. 6. 2. ~ 6. 2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먹거리생태·상생분과”를 “먹거리생태·상생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먹거리건강·보장분과”를 “먹거리건강·보장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먹거리공동체분과”를 “먹거리공동체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2022년 9월 21일”을 “2024년 9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구성) ①~② (생 략)</p> <p>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p> <p>2. (생 략)</p> <p>③~⑤ (생 략)</p> <p>제2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p> <p>1. ~ 3. (생 략)</p> <p>4. <u>먹거리생태·상생분과</u> : 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 먹거리 자원순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화 등)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p> <p>5. <u>먹거리건강·보장분과</u>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영양부족,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을 위한 지침개발,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p> <p>6. <u>먹거리공동체분과</u> :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이해관계자(시·자치구-먹거리공동체 등)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p> <p>7. <u>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u>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가능한</p>	<p>제2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1. ----- : -----, (<u>삭제</u>), ----- -----</p> <p>2. (현행과 같음)</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2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먹거리생태·상생분과위원회</u> : ----- ----- -----</p> <p>5. <u>먹거리건강·보장분과위원회</u> : ----- ----- -----</p> <p>6. <u>먹거리공동체분과위원회</u> : ----- ----- -----</p> <p>7. <u>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u> : ----- ----- -----</p>

현 행	개 정 안
<p>먹거리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먹거리 전략 2030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p> <p>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u>2022년 9월 21일</u>까지로 한다.</p>	<p>----- -----</p> <p>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 <u>2024년 9월 21일</u>----- -----.</p>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으로 예상되는 최대 111명의 위촉직 위원 회의 수당이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임 (산출근거 : 111명×150,000원×6회 = 99,900천원)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김정호(02-2133-4709)